

붙임1.

황룡강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주 민 등 의 의 견 수 렴 결 과 및 반 영 여 부)

2019. 12.

# 제1장 계획의 개요

## 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금회 과업하천인 황룡강권역의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대해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체계적인 개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 규정에 의거 황룡강(국가하천) 권역의 29개 지방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보전하며, 하천의 지정·관리·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하며 그 목표년도는 10년으로 한다.
- 하천자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하천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수계 하천현황과 수리현황의 보전 및 이용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정리 대장화하고 전산화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일관된 관리를 도모하고 하천사용의 이익 증진을 위한 기본자료를 제공코자 한다.

## 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에 의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대상사업으로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표 1-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자. 하천의 이용 및 개발	3)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리청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1.3 추진경위

- 2011년 09월 19일 : 황룡강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작성 용역 착수
- 2015년 04월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2015년 04월 17일~04월 27일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심의)
- 2015년 06월 08일~06월 25일 :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17년 07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제출

- 2017년 07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 2019년 07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작성
- 2019년 08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 1.4 사업의 내용

1.4.1 사업명 : 황룡강권역 하천기본계획수립 및 하천시설관리대장 작성

1.4.2 계획수립권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1.4.3 계획의 범위

- 계획대상지역 : 황룡강권역(국가하천 및 지방하천 28개소)
- 계 획 구 간 : 212.39km

1.4.4 사업내용

- 금회 과업대상 하천인 황룡강권역의 하천시설물 설치계획은 축제지구 119개소(L=62,621m), 보축지구 196개소(L=75,737m), 고수호안 10개소(L=3,195m), 저수호안 3개소(L=1,265m), 홍수관리구역 7개소(L=3,151m)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1.5 사업의 기대효과

- 수리·수문 특성변화와 하천의 관리운영을 고려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기본계획 수립
- 주변 하천의 관리, 이용, 보전, 개발, 치수경제 및 하천환경의 개선을 도모
- 하천의 효율적 보전 및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이·치수, 환경측면 등을 고려한 하천관리 기본방향 수립
- 하천의 자연적 특성을 살리며 지역사회 발전에 부응하는 하천환경 조성
- 하천변과 유역의 자연적, 사회적 특성 및 자연보전, 친수기능을 고려한 공간기능 설정으로 지역주민의 생활 개선 및 정서함양에 이바지

<표 1-2> 하천시설물 설치 계획

하천명	제방계획													
	제방 보강								호안설치					
	축 제				보 축				고수호안				저수호안	
	초안		본안		초안		본안		초안		본안		본안	
	개소	연장 (m)	개소	연장 (m)	개소	연장 (m)	개소	연장 (m)	개소	연장 (m)	개소	연장 (m)	개소	연장 (m)
황룡강(국가)	-	-	-	-	1	573	1	573	-	-	-	-	-	-
황룡강(지방)	2	1,597	1	235	7	2,608	7	3,075	-	-	-	-	2	910
황룡강(지방)	5	2,836	4	2,297	2	405	2	405	2	383	2	340	-	-
북하천	5	10,544	12	10,518	7	2,162	9	2,024	-	-	-	-	-	-
약수천	2	1,571	4	727	7	2,394	6	2,272	-	-	-	-	-	-
대약천	5	5,367	10	3,029	10	2,710	18	5,185	-	-	-	-	-	-
덕진천	8	7,005	1	125	-	-	11	4,865	-	-	-	-	-	-
장성천	2	620	3	835	6	990	3	1,810	-	-	-	-	-	-
개천	-	-	-	-	22	9,458	22	9,458	-	-	-	-	-	-
북이천	-	-	-	-	16	5,381	16	5,381	-	-	-	-	-	-
모현천	8	3,305	8	3,305	14	2,519	14	2,519	-	-	-	-	-	-
북일천	3	2,310	-	-	7	6,600	13	6,420	1	880	-	-	-	-
문암천	2	550	2	550	1	50	-	-	-	-	-	-	-	-
서삼천	11	6,465	4	2,005	14	2,235	15	6,040	-	-	1	405	-	-
동안천	7	3,885	8	4,090	-	-	-	-	-	-	-	-	-	-
관동천	9	6,750	8	6,650	2	60	3	535	-	-	-	-	-	-
단광천	1	165	1	165	11	1,940	3	1,070	-	-	-	-	-	-
동화천	7	3,065	7	2,460	9	2,475	5	2,840	-	-	-	-	-	-
구룡천	5	2,910	5	2,910	5	1,730	4	1,675	-	-	-	-	-	-
왕동천	-	-	-	-	9	3,730	6	3,565	-	-	2	470	-	-
평림천	12	10,145	13	9,225	16	12,275	15	9,260	1	380	1	150	1	355
삼계천	9	5,465	9	5,615	9	2,600	6	2,690	-	-	-	-	-	-
침천	3	3,085	4	3,125	2	280	2	280	2	175	2	445	-	-
북산천	5	2,360	5	2,365	1	510	3	680	-	-	-	-	-	-
오운천	3	890	6	1,925	8	2,140	8	2,845	-	-	-	-	-	-
서봉천	1	65	1	85	1	85	-	-	-	-	-	-	-	-
선암천	3	350	3	380	2	170	2	170	-	-	-	-	-	-
운수천	4	780	-	-	3	655	2	100	1	125	2	1,385	-	-
합계	122	82,085	119	62,621	192	66,735	196	75,737	7	1,943	10	3,195	3	1,265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하천명	제방계획				교량										보/낙차공동									
	기타(초안)		홍수관리구역(본안)		초안					본안					초안					본안				
	개소	연장(m)	개소	연장(m)	현황	존치	재가설	철거	신설	현황	존치	재가설	철거	신설	현황	존치	재가설	철거	신설	현황	존치	재가설	철거	신설
황룡강(국가)	-	-	1	1,356	8	7	1	-	-	8	7	1	-	-	2	2	-	-	-	2	2	-	-	-
황룡강(지방)	-	-	-	-	28	25	3	-	-	30	27	3	-	-	25	25	-	-	-	28	17	9	1	1
황룡강(지방)	-	-	-	-	14	4	7	3	-	13	3	7	3	-	12	-	5	7	-	12	-	5	7	-
북하천	-	-	-	-	18	9	8	1	-	18	7	9	1	1	18	3	12	3	-	18	-	12	6	-
약수천	-	-	-	-	13	3	10	-	-	13	2	11	-	-	10	5	4	1	-	10	5	4	1	-
대약천	-	-	-	-	20	8	12	-	-	18	5	12	1	-	19	2	12	5	-	19	3	11	5	-
덕진천	-	-	-	-	11	1	10	-	1	12	8	4	-	-	24	-	22	2	-	24	22	-	2	-
장성천	-	-	-	-	13	6	7	-	-	13	9	4	-	-	6	6	-	-	-	6	6	-	-	-
개천	-	-	-	-	25	15	10	-	-	25	14	11	-	-	38	37	1	-	-	38	25	13	-	-
북이천	-	-	-	-	15	8	7	-	-	15	8	7	-	-	28	28	-	-	-	28	-	28	-	-
모현천	-	-	-	-	22	11	11	-	-	22	11	11	-	-	56	30	26	-	-	56	-	56	-	-
북일천	1	515	1	280	9	2	7	-	2	11	8	3	-	-	21	12	9	-	7	28	27	-	1	-
문암천	-	-	-	-	3	1	2	-	-	3	1	2	-	-	4	1	3	-	-	4	1	3	-	-
서삼천	3	235	-	-	18	5	12	1	5	23	10	13	-	-	43	5	32	6	-	43	30	10	3	-
통안천	-	-	-	-	9	1	8	-	-	9	1	8	-	-	13	3	10	-	-	13	3	10	-	-
관동천	-	-	-	-	15	8	6	1	-	15	9	5	1	-	20	5	15	-	-	20	6	14	-	-
단광천	-	-	-	-	19	14	5	-	-	19	16	3	-	-	14	12	2	-	-	14	14	-	-	-
동화천	-	-	-	-	18	4	12	2	-	18	10	7	1	-	14	3	9	2	-	14	8	5	1	-
구룡천	-	-	-	-	12	2	10	-	-	12	2	10	-	-	8	2	6	-	-	8	2	6	-	-
왕동천	-	-	-	-	11	8	3	-	-	11	7	4	-	-	10	6	2	2	-	10	5	4	1	-
평림천	2	500	3	840	38	13	24	1	-	38	17	21	-	-	51	21	29	1	-	53	18	35	-	-
삼계천	-	-	-	-	20	13	4	3	-	20	12	8	-	-	16	4	11	1	-	16	7	9	-	-
침천	-	-	-	-	16	4	11	1	-	16	4	11	1	-	15	10	5	-	-	15	9	6	-	-
북산천	-	-	-	-	12	-	8	4	-	12	-	8	4	-	12	1	4	7	-	12	1	5	6	-
오운천	-	-	-	-	9	2	7	-	-	9	2	7	-	-	10	1	4	5	-	10	1	9	-	-
서봉천	1	41	-	-	4	1	3	-	-	4	1	3	-	-	2	-	-	2	-	2	1	-	1	-
선암천	3	685	2	675	7	-	5	2	-	7	-	5	2	-	1	-	-	1	-	1	-	-	1	-
운수천	3	153	-	-	22	8	10	4	-	22	16	6	-	-	7	1	1	5	-	7	3	-	4	-
합계	13	2,129	7	3,151	429	183	223	23	8	436	217	204	14	1	499	225	224	50	7	511	216	254	40	1

## 제2장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 2.1 주민의견 수렴개요

- 본 사업으로 인하여 유발될 수 있는 환경상의 영향에 대한 지역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환경영향평가법 제 13조에 의거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 의견을 수렴함

#### 2.1.1 관련주체

- 계획수립권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2.1.2 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고·공람

- 주관 행정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관계행정기관 : 영산강유역,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광산구, 장성군, 담양군
- 일간신문 : 세계일보
- 지역신문 : 무등일보
- 관계행정기관 홈페이지(익산지방국토관리청 및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 2.2 주민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실시근거

-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를 공개하고자 함

#### <표 2-1> 관련 법규

법	시행령
<p><b>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b></p> <p>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 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고 공람하고 설명회를 개최하여 해당 평가 대상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이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하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p> <p>④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등의 의견 수렴결과와 반영 여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p>	<p><b>제19조(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b></p> <p>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를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에 개발기본 계획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 또는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p>

2.2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2.2.1 주민의견

○ 주민의견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장성군	동화면	○ 덕산저수지 위 1.5km정도 구간에서 제방이 무너지고 하천이 범람해서 피해가 있었으니 그 부분도 계획에 포함해서 피해가 없도록 전체적으로 검토 바람	○ 수리검토 상 범람되는 구간은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고려하여 개수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 논과 논 사이 교량 부족	○ 기존 교량 능력검토,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교량 신설여부를 검토하였음.	반영
	삼서면	○ 농로로 사용하고 있는 월산리 하천둑을 제거하고 넓히면 농로로 이용할 수 없음	○ 금회 평림천 하천개수계획 수립을 통해 여유고 및 독마루폭 확보로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북하면	○ 대약천과 월성리 경계 사이에 하천이 범람해 정비 필요	○ 범람구간은 개수계획을 수립하여 홍수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반영
		○ 신용마을에 철거되는 교량은 어디인지?	○ 황룡천 하류부 쌍용교와 국도교량 간 나대지에 위치하여 사용성이 없는 교량을 철거 계획하였음. 신용마을에 위치한 교량은 재가설 계획 수립함.	반영
		○ 이용중인 교량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철거하지 않아야 함	○ 이용중인 교량은 존치 및 재가설로 계획하여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음.	반영
		○ 공사시 발생하는 민원은 어디에 건의해야하는지?	○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실시설계에 따른 하천공사가 시행되면 관련 승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음.	반영
		○ 북이천이 기존에는 보를 통해 농경지로 배수되었으나 현재 보가 없어져 물이 모이지 않음	○ 달성저수지 하류구간은 저수지를 통한 농업용수공급이 확보됨. NO.2+229 무명교지점의 교량 하단부 세굴방지 및 자연형여울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북이면	○ 모현천 부근에 하천이 범람하는 곳이 있어 조치 필요	○ 수리검토 상 범람되는 구간은 계획홍수위에 여유고를 고려하여 개수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북일면	○ 문암천에서 확장할 부분의 외관을 자연석 등으로 정비해주시기 바람	○ 금회 하천개수계획 수립시 자연석쌓기 등 친환경 호안공법을 적용토록 보고서에 제시하였음.	반영
		○ 문암천 좌안보축1지구의 하폭 변경 여부	○ 보축지구의 경우 하폭 확장 구간은 아니며, 여유고 부족에 따른 제방 보강계획임.	반영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장성군	황룡면	○ 논에 사설보가 있는데 공사를 하면 어떻게 처리할지? 보를 신설해주시기 바람	○ 현재 사용중인 취수보는 노후화 및 확장 여부를 검토하여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천경계에 도로를 냈는데 마을 앞으로 군부대 훈련 전차가 다님. 하천계획 수립시 마을 앞으로 전차가 다니지 않게 해주기 바람	○ 제방도로는 홍수시 하천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도로이며, 해당 내용은 관계기관에 건의하여 조치토록 하겠음.	반영
		○ 사업 시행시 개인 소유의 땅이나 국가 소유의 땅이 편입될 때 보상 방안	○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이며, 향후 실시시설계가 완료된 후 사업시행 시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보상방안을 제시토록 하겠음.	반영
		○ 관동천은 우안에 도로가 있고 좌안에 주택이 있어 확장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대책은? 우안에 도로를 확보해 넓히면 좋겠지만 우안에도 주택이 있어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함.	○ 좌안은 주거지, 우안은 도로가 위치하여 여유고가 부족한 구간은 하폭확장보다는 현하폭을 유지하는 보축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 공사 후 유지관리 계획은?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장성읍	○ 덕진천은 정비가 잘 되어있으니 문제가 되는 소하천을 정비 바람	○ 소하천 정비에 대한 사항은 장성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과 관련있음.	반영
		○ 하천 정비를 잘해줘도 주변 논 주인들이 훼손하여 문제가 발생함. 유지관리 방안은?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삼계면	○ 하천 정비를 직선으로 하는지? 곡선으로 유지하는게 좋을거라 생각	○ 과도한 선형 변경 보다는 기존 하천유로를 유지토록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서삼면	○ 서삼천은 잡초로 인해 물 흐름이 막힘. 정비를 해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이 문제에 대한 검토 바람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하천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 현재 하천을 수시로 보수공사 하고 있는데 또 일부 농지가 포함된다고 하면 현재 하폭보다 얼마나 넓어진다는 건지	○ 과도한 하천단면 확장이 없도록 통수단면 확보를 통한 적정 계획하폭을 산정하였음.	반영
		○ 기존에 공사가 진행되어 왔는데 지금 계획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 하천기본계획은 10년마다 재수립하고 있어 기존 공사가 완료된 구간이라 하더라도 홍수시 문제가 없는 지 검토하여 하천개수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담양군 월산면	○ 용암리 앞에 낙차공을 제거한다는데 그곳에 잠관이 설치되어 있음. 낙차공을 제거하면 잠관을 다시 설치하는지? 다시 설치한다면 크게 설치해주시기 바람	○ 향후 실시설계시 잠관 설치현황을 고려하여 사용이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겠습니다.	반영
	○ 상업시설이 있는 곳은 하천이 개수되면 민감한 문제가 발생함. 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함	○ 공사전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할 것이며, 공사시 주변 마을에 사전공지를 하여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하겠음.	반영
	○ 농경지에서 하천으로 배수가 되는데 배수로를 사선으로 계획하는 쪽으로 설계바람	○ 향후 실시설계시 배수로에 대한 설치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반영
	○ 담양저수지 쪽 하천은 많은 비가와도 큰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굳이 하천 폭을 넓히기 보단 하천 바닥을 깊게 계획하는 게 좋을 것 같음	○ 하천 개수계획시 적정하폭 및 하상고를 유지하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 하천정비 전이나 후나 토사가 쌓이고 풀이 무성해져 침수되고 피해가 발생함. 사후관리가 필요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 배수로를 사선으로 빼면 침수문제가 해결될거라 생각함	○ 향후 실시설계시 배수로에 대한 설치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반영
	○ 좌안축제3지구(월산천) 쪽 하폭을 넓힐건지 좁힐건지?	○ 좌안축제3지구는 확폭 계획함.	반영
	○ 북하천 제방공사 했던 곳에 문제가 있어 제방을 보수한 후 공사를 시행해야 함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향후 제방공사시 기존제방 보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음.	반영
	○ 월산교 다리 있는 곳은 공사한지도 얼마 안됐고 현재 다리 높이도 높아 다리를 더 높힐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 교량 능력검토, 시공연도,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교량의 존치 및 재가설 여부를 검토하였음.	반영
광주 광산구	○ 산덕동 근처 저수지 공사를 2016년에 진행했는데 하부 공사는 예산이 없어 못함	○ 저수지 정비에 대한 사항은 관련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 하천 바닥공사로 발생한 토사는 지역주민을 위해 사용하기 바람	○ 향후 실시설계시 토사이용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반영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비고
광주 광산구	본량동 ○ 왕동천은 주거지보다 하천 지대가 높아 독을 계속 보강하는데 독을 높히기 보다 하도준설을 하는게 좋다고 생각함	○ 왕동천은 일부 주거지 구간의 하폭이 협소하여 홍수위가 부족한 구간으로 하도준설 계획을 통해 홍수위를 최대한 낮추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 독 보강으로 인해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함	○ 향후 공사 시행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음.	반영
광주 광산구	○ 황룡강 부근 지형이 낮아 제방을 범람하는 경우가 많고 배수도 잘 안되어 주변지역이 침수됨	○ 범람구간은 축제 및 보축계획을 수립하여 홍수피해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음.	반영
	○ 협의회 구성에 지역주민이 들어있지 않음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외 9인으로 구성됨.	반영
	○ 임동교가 상당히 낙후되어 재가설 필요	○ 교량 능력검토, 시공연도, 사용성 등을 고려하여 임동교는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함.	반영
	○ 임곡주유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지?	○ 임곡주유소 앞 도로는 지속적으로 이용 가능함.	반영
	○ 하폭을 300m-500m 정도로 넓히면 배수에 좋을 것 같음	○ 해당구간의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 지형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폭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음.	반영
	○ 협의회 구성원들이 적합한지?	○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적법한 과정을 거쳐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공무원 외 9인으로 구성됨.	반영
	○ 현재 진행이 많이 된 것 같은데 설명회를 더 해서 주민의견을 더 많이 수렴했으면 좋겠음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가 설명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겠음	반영
	○ 임곡동 주변 하천에 놀러온 피서객들의 쓰레기와 하천 내 모래 채취 허가로 하천이 엉망임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하천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 임곡농협에서 진행된 황룡강 관련 주민 설명회가 있었음	○ 임곡농협에서 진행되었던 주민설명회 의견도 참고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음	반영
	○ 송산교(유원지) 개설 후 배수가 어려움. 낙차를 없애면 좋겠음	○ 송산 유원지 이용현황, 수리검토 등을 통해 청등보는 존치하는 것으로 결정함.	반영

환경영향평가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구분		주민의견	조치계획	बा고
광주 광산구	삼도동	○ 제방 공사 후 주변 농경지에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됨	○ 하천 주변 농경지에 대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음.	반영
		○ 하천법에 의해 제방 일부가 포장이 안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포장을 해주기 바람	○ 향후 실시설계시 제방정단폭 확보 및 포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	반영
		○ 평림천 내에 사유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보상방안은?	○ 현재는 기본계획 수립단계이며, 향후 실시설계가 완료된 후 사업시행 시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통해 보상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음.	반영
		○ 하천에 돌을 깔면 토사가 쌓이고 나무가 자라고 쓰레기가 걸리는 등 문제가 생겨 범람함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하천관리 방안을 검토하겠음.	반영
	○ 평림천과 오운천 사이에 교량 신설 바람	○ 기존 교량 사용여부, 제내지 이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평림천과 오운천 사이에 위치한 기존 송산교의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어룡동	○ 운수천이 광주-무안간고속도로에서 발생된 타이어 마모 찌꺼기 등으로 인한 오염이 심각해 대책이 필요함	○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하천유지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음.	반영	

○ 주민의견서

구분	주민의견	답변 및 조치계획	비고
장성군	○북이천 NO.2+200인근에 취입를 시설해 주었으면 합니다	○북이천 달성저수지 하류구간은 저수지를 통한 농업용수공급이 확보되었으나, 추가적인 수혜면적은 농촌용수공급사업 등을 통하여 공급능력을 확보하여야 함 ○대상구간에 취입보를 신설하게 되면 계획홍수위 상승으로 추가적인 보축 또는 축제가 필요하게 됨	반영
	○개천 NO.14+000 인근에 하천경관 및 통행을 위한 징검다리 설치 요청	○개천 NO.14+000 상류 260m 지점에 교량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여 통행 확보	반영
	○북이천 NO.3+800 인근으로 하천물이 범람하므로 제방높이 및 폭을 넓혀주었으면 함	○북이천 NO.3+800 인근 달성들 구간은 하천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축계획(제방높이 및 폭)을 수립하였음	반영
	○모현천 NO.0+045 지점의 취입보가 노후화되고 높이가 낮으므로 재가설 요청함	○모현천 NO.0+045 지점 취입보는 능력검토결과 부족으로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개천 NO.19+300 인근에 위치한 취입보에 대하여 노후되었으므로 재가설 요청함	○개천 NO.19+013 지점 원덕 제7취입보는 능력검토결과 부족으로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음	반영
	○개천 NO.17+831 지점의 잠수보로 통행시 우기시에 위험하고 노후화되었으므로 교량 신설 요청함	○개천 NO.17+831 지점의 잠수보는 능력검토결과 부족으로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음 ○통행은 인근의 NO.17+147 지점의 개천9교와 NO.18+950 지점의 원덕교를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는 바, 상기의 교량을 통하여 통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반영
	○황룡면 맥호리 답 226-1, 227번지 상기답은 사설보를 막아 경작하고 있으며, 50mm이상 강우가 내리면 보가 터져버리는 보를 신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지번 상하류로 기존보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회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음. ○추가 보를 신설하면 홍수위 상승 등 치수상 문제가 발생되므로 향후, 실시설계시 해당지점 직상류 맥호5취입보 개량으로 취입수로를 연결하여 용수공급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반영

구분	주민의견	답변 및 조치계획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화 8낙차공(NO.4+364), 동화 9낙차공(NO.4+522)의 보의 기능강화(높이승상)하고 가장자리에 수문설치(농로에서 바로 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실시설계시 취수문 설치 등의 낙차공 개량을 통해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화 1~10교중 상당교량이 유효폭이 4m 정도로 대형 농기계 및 차량의 진입 및 이동이 힘들, 유효폭을 6m정도로 확장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실시설계시 농기계 대형화 및 차량증가에 따른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현재보다 유효폭을 확장하여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화 7교(NO.3+200) 유효폭(6m→8m)로 확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실시설계시 진입도로의 규모(도로등급)을 고려하여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을 확장하여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화 6낙차공(NO.3+590)에 보의 시설을 강화(보의 높이를 높여)물을 가두어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보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실시설계시 취수문 설치 등의 낙차공 개량을 통해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룡 1,2,3,4,6교 유효폭이 좁아 대형 농기계 및 차량의 진출입 및 이동이 힘들, 폭을 6m이상으로 확장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실시설계시 농기계 대형화 및 차량증가에 따른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현재보다 유효폭을 확장하여 설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천제방 농로 유지를 위한 콘크리트 포장(천변 콘크리트 포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실시설계시 제방정단폭 확보 및 포장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음.</li> </ul>	반영
광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도동 5통, 6통간 내동교 교량 재가설도 포함시켜주세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내동교 교량능력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재가설 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산동 721-18번지는 주택지 인데 교량이 없음 명도동 가마마을에서 통행할 수 있는 교량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지점 직하류로 횡단교량이 있으며 신설 교량 계획 수립시 공사에 따라 우안측 주택 저축 등으로 민원발생 및 보상이 필요함에 따라 금회 추가 교량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음.</li> <li>교량신설은 하천점용사항으로 향후, 교량의 필요성 및 주민의견을 추가 반영하여 하천의 계획하폭 및 계획홍수위를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li> </ul>	반영

2.2.2 관계 행정기관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전라남도	<p>○평가서에서 제시한 환경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수립 및 시행하여야 함.</p>	<p>○평가서에서 제시한 환경저감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p>	반영
	<p>○향후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 될 경우, 승인기관에서는 사업 승인시 20일 이내에 부과기관인 우리 도 동부지역본부(환경보전과)에 승인내역(또는 변경면적)을 제출하여야 함.</p> <p>※ 제출대상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제4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으로 개발면적 3만㎡ 이상인 개발사업 등</p>	<p>○향후 개발사업으로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사업에 해당 될 경우, 승인기관에서는 사업 승인시 20일 이내에 부과기관인 우리 도 동부지역본부(환경보전과)에 승인내역(또는 변경면적)을 제출하겠음.</p>	반영
	<p>○하천 호안은 친자연형 하천공법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함.</p>	<p>○하천 호안은 친자연형 하천공법을 적용하였음.</p>	반영
	<p>○하천의 직선화 또는 하상의 평면화는 지양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여울과 소를 조성하는 등 가능한 자연형태의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설계·시공하여야 함.</p>	<p>○하천의 직선화 또는 하상의 평면화는 지양하고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여울과 소를 조성하는 등 가능한 자연형태의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수립하였음.</p>	반영
	<p>○낙차공 보 등의 하천구조물은 하천의 연속성 및 어류 이동에 장애를 주이므로 설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화해야 함</p> <p>-어도 설치시에는 계획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 특성 및 현장여건(경사면, 유속) 등을 고려하여 생태환경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야 함</p>	<p>○낙차공 보 등의 하천구조물은 하천의 연속성 및 어류 이동에 장애를 주이므로 설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화 하였음.</p> <p>-어도 설치시에는 계획 하천에 서식하고 있는 어류 특성 및 현장여건(경사면, 유속) 등을 고려하여 생태환경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였음</p>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전라남도	○공사시 자연지형 변화, 식생훼손 및 토사유출에 따른 동식물상, 법정보호종(삼, 수달 등), 생태계 등 영향이 예상되므로 각 영향요인별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함.	○공사시 자연지형 변화, 식생훼손 및 토사유출에 따른 동식물상, 법정보호종(삼, 수달 등), 생태계 등 영향이 예상되므로 각 영향요인별로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	반영
	○공사시 장비의 가동, 작업차량 진출입, 야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살수, 세륜 및 세차시설 등)을 설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공사시 장비의 가동, 작업차량 진출입, 야적 등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하여 인근지역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살수, 세륜 및 세차시설 등)등 저감계획을 수립하겠음.	반영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마을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진동 예방대책을 수립 철저히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전 사전 주민 설명 등을 통해 민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함.	○공사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마을 등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음진동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공사전 사전 주민 설명 등을 통해 민원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음.	반영
	○공사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분뇨 발생에 대하여 처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공사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및 분뇨 발생에 대하여 처리대책을 수립하였음.	반영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허가는 사전에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	○환경관련 법규에 따른 모든 인허가는 사전에 득하고 사업을 시행하겠음.	반영
	○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 및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야 함. 끝.	○공사 및 운영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하였던 상황의 발생 또는 예측의 부적정 등으로 주변 환경에 추가적인 악영향 및 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본 협의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 외에 별도의 대책을 신속히 강구하여 시행하겠음.	반영

구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광주광역시	<p>1. 자연환경의 보전</p> <p>○ 문헌과 현지조사로 확인된 법정보호종(수달, 삿, 황조롱이 등 / 황룡, 덕진, 북이, 평립지점)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통사리, 황룡강-7지점)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주변 서식환경 생태계 보호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함.(p234~305)</p> <p>-공사시 법정보호종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인지 조사검토하여야 함.</p> <p>-산란·번식기 및 야간에는 공사 지양, 보호종 발견시 보호대책 마련 후 공사시행</p>	<p>○ 문헌과 현지조사로 확인된 법정보호종 및 멸종위기 야생생물 I 급을 비롯한 다양한 생물종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주변 서식환경 생태계 보호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였음.</p> <p>-공사시 법정보호종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의 자문을 통해 법정보호종의 서식지인지 조사 검토하겠음</p> <p>-산란·번식기 및 야간에는 공사 지양, 보호종 발견시 보호대책 마련 후 공사시행 할 것임</p>	반영
	<p>○ 수달, 삿 출현지점 및 주변지역(황룡, 개천, 북이, 오운, 송산 등)은 인근 이동경로와 주 서식처 구간에 대한 관리계획 별도 수립 (p285~289)</p> <p>-동시다발적 공사를 피하고 구간별 단계적 시행으로 보호·관리대책 마련</p>	<p>○ 수달, 삿 출현지점 및 주변지역은 인근 이동경로와 주 서식처 구간에 대한 관리계획 별도 수립하겠음</p> <p>-구간별 단계적 공사를 시행 계획을 수립 하였음</p>	반영
	<p>○ 계획된 29개 하천에서 수질을 측정하였으나, 수질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총유기탄소(TOC)에 대한 측정값이 없으므로 재이행하여 측정결과를 평가서에 반영하여야 함.(p435~456)</p>	<p>○ 수질의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총유기탄소(TOC)에 대한 재이행하여 측정결과를 반영하였음.</p>	반영
	<p>○ 광주시 주요 습지로 ‘임곡습지’와 ‘장록습지’가 분포되어 있으므로 위 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방안 강구 필요.</p>	<p>○ 광주시 주요 습지로 ‘임곡습지’와 ‘장록습지’가 분포되어 있으므로 위 습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전방안을 수립하였음</p>	반영
	<p>○ 제방계획에 따른 보강 및 호안설치에는 자연형 환경공법을 적용하는 등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강구하여야 함.</p>	<p>○ 제방보강 및 호안설치에는 자연형 환경공법을 적용하는 등 생태하천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계획을 수립하였음.</p>	반영
	<p>○ 총 연장길이가 152,889m(축제 82,085m, 보축 66,732m, 호안 4,072m)로 심각한</p>	<p>○ 총 연장길이가 145,969m으로 최소화하였으며, 하상교란을 최소화하였으며,</p>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광주광역시	<p>하상교란이 예상되는 바, 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주변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계획을 수립, 반드시 필요한 하천정비사업 여부를 재검토하여 목적에 맞지 않는 치수계획은 제외 바람.(p461~473, p857)</p> <p>-공사로 인한 토사유출량이 최소화되도록 2중으로 오탉방지막 설치를 권고하며, 강우시 또는 장마철에는 토공작업 전면 중지하여야 함.</p>	<p>이격거리를 확보하여 주변 마을에 피해가 없도록 안전계획을 수립하였고, 반드시 필요한 하천정비사업 여부를 재검토하여 목적에 맞지 않는 치수계획은 제외 하였음</p> <p>-공사로 인한 토사유출량이 최소화되도록 2중으로 오탉방지막 설치를 하며, 강우시 또는 장마철에는 토공작업을 중지하도록 할 것임.</p>	반영
	<p>2. 생활환경의 안정성</p> <p>○사업시행 시 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주변 정온시설 및 동식물에 피해가 없도록 공중별로 순차적 진행하고 현장에 적합한 환경영향 저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함.(p781~803)</p>	<p>○비산먼지, 소음·진동 등으로 주변 정온 시설 및 동식물에 피해가 없도록 공중별로 순차적 진행하고 현장에 적합한 환경영향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음.</p>	반영
	<p>○공사에 따른 지장물 철거과정에서 다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바, 하천 공사지역에 속해있는 각 시군별로 적정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함.(p804~827)</p> <p>-훼손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전량재활용 가능토록 처리계획에 포함</p>	<p>○지장물 철거과정에서 다량의 건설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바, 하천 공사지역에 속해있는 각 시군별로 적정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실시계획시 제시하겠음</p> <p>-훼손으로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전량 재활용 가능토록 처리계획은 실시계획시 수립할것임.</p>	반영
	<p>○하천구역 주변에 경작활동이 넓은 경우 비점 오염원으로, 사업예정지에 건물이 신축될 경우 점오염원으로 작용하므로, 시행될 사업과 경작지를 파악하여 초지조성, 차집관로 설치 등 오염물질 하천 직유입 방지를 위한 오염원(비점, 점) 저감계획을 검토하여야 함.</p>	<p>○실시계획시 사업지역내 건축물이 신축될 경우 수질오염총량을 검토하여 시군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저감대책을 수립하였음</p>	반영
	<p>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p> <p>○이용자 수요와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예정지와 주민이용이 빈번한 장소를 친수지구로, 호안이나 복개 등 공사</p>	<p>○이용자 수요와 활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예정지와 주민이용이 빈번한 장소를 친수지구로,</p>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광주광역시	정비를 통해 하천기능을 개선하는 구간을 복원지구로 설정하여 지정면적, 친수시설 등이 포함된 세부적인 조성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p847~849)	공사정비를 통해 하천기능을 개선하는 구간을 복원지구로 설정하여 지정면적, 친수시설 등이 포함된 계획을 제시하였음	반영
	<p>○여울 및 소(沼) 등 자연지형과 바위나 돌, 모래, 자갈 등 하상재료가 있는 구간은 훼손이 없어야하며, 하천골재 반출금지 등 다양한 지형 및 식생공간이 유지되어야 함.(p847~899, p214~234)</p> <p>-하천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천골재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고 관련 내용 제시</p>	<p>○자연지형과 바위나 돌, 모래, 자갈 등 하상재료가 있는 구간은 훼손이 최소화하고, 하천골재 반출금지 등 다양한 지형 및 식생공간이 유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음</p> <p>-하천공사에서 발생하는 하천골재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관계기관과 사전 협의하겠음</p>	반영
	<p>○일부 보, 낙차공에 설치하는 어도는 실시설계 수립 시 해당 하천별 어종현황, 수위변화, 유량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어도 형식을 올바르게 선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함.(p901~905)</p> <p>-신설 및 재가설 하는 보, 낙차공에 어도 미설치하는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한 내용 제시</p>	<p>○어도는 실시설계 수립 시 해당 하천별 어종현황, 수위변화, 유량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어도 형식을 올바르게 선정하고 관계기관과 협의하겠음</p> <p>-신설 및 재가설 하는 보, 낙차공에 어도 미설치하는 경우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제시하겠음</p>	반영
	<p>4. 기 타</p> <p>○수질오염총량제 등 수질, 대기, 폐기물분야 등은 관련부서와 협의</p> <p>-총량 해당구역 : 황룡 A01~13, 영본 B18, 영본 B20~25, 영본 B30</p>	<p>○수질오염총량제 등 수질, 대기, 폐기물분야 등은 관련부서와 협의하였음</p>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영산강유역환경청	1. 총 괄 ○본 건은 황룡강권역 28개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사업추진 및 원활한 유지관리와 하천의 일관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하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의견임		
	○ 획일화된 이치수계획 적용, 관리의 효율성과 수리수문 측면만을 강조한 정비계획은 향후 하천의 기능 및 자연성 유지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하천별 환경현황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보존하고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반영하여 하천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하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 및 낙차공의 설치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 필요	○하천별 환경현황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여 하천의 자연성을 보존하고 수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천별 계획을 수립하였음 - 하천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 및 낙차공의 설치에 대해서 능력검토를 실시하여 준치, 재설치, 철거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어도 및 여울 등을 설치하여 연속을 유지되도록 하였음	반영
	○본 계획은 황룡강권역 28개 하천의 이치수 및 환경계획의 근간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실시계획이 본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하천정비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사업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함	○하천의 이치수 및 환경계획의 근간을 수립하는 것이므로 향후 실시계획이 본 기본계획에서 설정된 하천정비 방향으로 시행되도록 사업 전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하였음	반영
	○본 계획과 국가차원 환경 분야 종합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자연자원 보전 및 효율적 이용방향과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등 상위·연관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환경보전 시책과의 부합 여부를 검토·비교 제시하여야 함	○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자연자원 보전 및 효율적 이용방향과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등 상위·연관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합성과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 환경보전 시책과의 부합여부를 검토·비교하여 제시하였음	반영
	○계획하천별 각종 보호구역,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공간, 자연성이 우수한 지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의 존재여부를 위치도와 표 등으로 구분 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안에 제시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분안에 제시하고, 이에 대한 보전계획을 함께 제시하여야 함	○계획하천별 각종 보호구역,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공간, 자연성이 우수한 지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의 존재여부를 위치도와 표 등으로 구분하여 분안에 제시하였고, 이에 대한 보전계획을 함께 제시하였음.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영산강유역환경청	<p>○본 하천기본계획 재수립에 따른 지구지정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도면 포함)</p>	<p>○지구지정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p>	반영
	<p>○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본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저감방안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반영·작성하여야 함</p>	<p>○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저감될 수 있도록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및 본 검토의견에서 제시한 저감방안 등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반영하여 작성하였음</p>	반영
	<p>2. 세부 협의내용 가. 계획의 적정성 ○황룡강권역 하천기본계획은 국가차원 환경 분야 종합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자연자원 보전 및 효율적 이용방향과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함 -자연적 특성과 생태적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지침* 등을 참고하여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적극 반영 ·영향예측 및 평가시 산정과정 등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 * 「지속가능한 하천사업(소규모·전략)환경영향평가 가이드라인(2015.3, 환경부)」, 「생태하천 복원 기술 지침서(2014, 환경부)」</p>	<p>○환경 분야 종합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자연자원 보전 및 효율적 이용방향과 ‘수자원 장기종합계획’ 추진방향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였음 -규정·지침* 등을 참고하여 하천의 고유성과 자연성을 최대한 보전하고 하천생태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음 ·영향예측 및 평가시 산정과정 등 근거자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p>	반영
	<p>나.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황룡강 본류 및 지천에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 법정보호종들이 서식하고 있으며, 주요 생물서식지들이 분포하고 있는 바,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이러한 생태적 민감성·건강성을 보전·복원할 수 있는 계획들이 수립·반영되어야 함 -생물서식처·인공습지 조성 등을 이용한 수환경개선 대책, 생물서식지 개선방안 등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계획 수립</p>	<p>○천연기념물,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등 법정보호종들이 분포하고 있는 바,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이러한 생태적 민감성·건강성을 보전·복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였음 -생물서식처를 제공하는 하천내 훼손을 최소화하고 홍수관리구역 등을 지정하는 등 수환경개선 대책, 생물서식지 개선방안 등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음.</p>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영산강유역환경청	<p>○ 하천정비를 통해 이동성 조류, 양서·파충류 등의 주요 서식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대상 구간 내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사업구간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반영하여야 함</p>	<p>○ 이동성 조류, 양서·파충류 등의 주요 서식공간이 훼손되지 않도록 사업대상 구간 내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사업구간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였음</p>	반영
	<p>○ 총 499개의 보 및 낙차공에 대해 225개소 존치, 224개소 재가설, 50개소 철거, 7개소 신설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기능분석 결과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바, 기능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지, 재가설 또는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반영하여야 함</p>	<p>○ 보 및 낙차공에 대한 기능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유지, 재가설 또는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반영하였음.</p>	반영
	<p>○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군 및 어류 중 한국고유종이 출현한 구간을 상세히 명기하고 이들 구간에 대한 하상교란이 유발되지 않도록 공사시 저감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이들의 산란시기를 고려하여 공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개체군의 유지를 위한 저감방안을 도출반영</p>	<p>○ 한국고유종이 출현한 구간에 대한 하상교란이 유발되지 않도록 공사시 저감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였음. -이들의 산란시기를 고려하여 공사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개체군의 유지를 위한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p>	반영
	<p>○ 적용 예정인 호안공법들은 구간별로 명확한 형식을 확정하여야 하며, 그 형식은 하천의 생태계가 개선되고 복원될 수 있는 공법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식생의 도입을 저해(자연석 쌓기, 축석, 홍수 방어벽 등의 형식)하고, 홍수 시 훼손되지 않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육수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들은 적용을 지양 -호안의 형상 및 축제재료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 내지 강화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대부분 구간의 기존 호안이 흙과 식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구간의 새로 조성하는 호안도 가급적 같은 형태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 -하천생태계의 복원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식생의 도입이 우수하고 호안의 안정성도 유지하는 저렴한 환경친화적인 공법들을 조사 비교하여 적용</p>	<p>○ 호안공법들은 구간별로 명확한 형식을 확정하였고, 그 형식은 하천의 생태계가 개선되고 복원될 수 있는 친환경호안공법을 선정하였음 -식생의 도입을 저해하고, 홍수 시 훼손되지 않는 기능에 중점을 두어 육수동물의 서식처를 제공하지 못하는 공법들은 적용을 지양하였음 -호안의 형상 및 축제재료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 내지 강화되는 방향으로 계획하고 기존 호안이 흙과 식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동 구간의 새로 조성하는 호안도 가급적 같은 형태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하천생태계의 복원에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며 식생의 도입이 우수하고 호안의 안정성도 유지하는 저렴한 환경친화적인 공법들을 비교하여 적용하였음.</p>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영산강유역환경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달, 삵 등 이동성이 높은 법정보호종을 보호하고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비대상 과업구간을 300~500m 단위의 하천구역으로 구분한 후, 이들 각 구역의 정비를 징검다리식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일정기간별로 (격월제 또는 계절별) 정비를 실시하는 계획을 반영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비대상 과업구간을 300~500m 단위의 하천구역으로 구분한 후, 이들 각 구역의 정비를 징검다리식으로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일정기간별로 (격월제 또는 계절별) 정비를 실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화식물 분포의 증가는 수변생태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제거 및 관리방안을 함께 고려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귀화식물 분포의 증가는 수변생태계의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바, 이들에 대한 제거 및 관리방안을 함께 고려한 정비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반영하였음</li> </ul>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헌 및 현지조사에서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바, 이들의 출현 및 서식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법정보호종이 확인된 바, 이들의 출현 및 서식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하였음</li> </ul>	반영
	<p>나)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하천 중·상류부를 포함하여 수변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인위적인 시설물 도입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식재되는 식물종은 현지 수변식생을 중심으로 계획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이질적인 경관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li> <li>-사업 시행 전후 경관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점에서 축제, 호안, 교량설치 등에 따른 계획을 반영한 경관시뮬레이션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변경관이 우수한 지역은 인위적인 시설물 도입을 최소화하였고, 실시설계시 식재되는 식물종은 현지 수변식생을 중심으로 계획하여 주변 자연경관과 이질적인 경관이 조성되지 않도록 하였음.</li> <li>-사업 시행 전후 경관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요 지점에서 계획을 반영한 경관시뮬레이션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하였음</li> </ul>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영산강유역환경청	<p>○대상 하천 구간 중 호안이 현재 자연형으로 이루어져 있거나 산지나 초지 등 자연경관 요소와 연결한 구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호안 등 시설물 조성을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필요함</p> <p>-상기 구간에 하천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그 필요성을 명시하고 이격거리와 단면도, 공사용 가도 등을 도면으로 작성하여 시설물 설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p>	<p>○호안이 현재 자연형 및 산지나 초지 등 자연경관 요소와 연결한 구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호안 등 시설물 조성을 최소화하였음</p> <p>-상기 구간에 하천시설물이 설치될 경우 그 필요성을 명시하고 이격거리와 단면도, 공사용 가도 등을 도면으로 작성하여 시설물 설치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음</p>	반영
	<p>다) 수환경의 보전</p> <p>○금회 하천기본계획은 축제 및 보축 계획 등 주요 치수시설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나, 종합적인 하천의 보전·관리를 위해 이수관련 제반시설의 현황 및 관리방안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함</p> <p>-특히 계획하천 주변 농경지의 경우, 용수공급을 위한 지하수 관정이 다수 개발·이용되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하수 관정현황을 조사(하천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 위치, 용도, 이용량, 관정제원)하고 필요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함</p>	<p>○축제 및 보축 계획 등 주요 치수시설 중심으로 수립되었으나, 종합적인 하천의 보전·관리를 위해 이수관련 제반시설의 현황 및 관리방안을 추가로 반영하였음</p> <p>-주변 농경지의 경우, 용수공급을 위한 지하수 관정이 다수 개발·이용되는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하수 관정현황을 조사하였고 실시설계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임</p>	반영
	<p>○각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용 법정기간 중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시행 가능한 수질개선 및 오염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금회 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함</p>	<p>○각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용 법정기간 중 목표수질을 설정하였고, 시행 가능한 수질개선 및 오염원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음.</p>	반영
	<p>○계획하천별 제방월류에 의한 침수피해 가능성, 제방 보강을 통해 보호되는 시설(가옥, 농경지, 도로 등), 토지이용 현황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한바, 아래의 사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검토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함</p> <p>-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또는 홍수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금회 계획하천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p>	<p>○계획하천별 제방월류에 의한 침수피해 가능성, 제방 보강을 통해 보호되는 시설(가옥, 농경지, 도로 등), 토지이용 현황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적정규모의 사업계획을 수립하였음</p> <p>-하천재해위험지구 지정 또는 홍수피해 현황을 조사하고 금회 계획하천에 해당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관련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음</p>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영산강유역환경청	<p>-계획하천의 측점별 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개수 전, 개수 후), 하폭(현재, 계획), 기설제방고(좌·우), 여유고, 부족고 검토결과를 포함한 개수계획을 표로 정리하여 제시</p> <p>-배수시설, 교량, 보·낙차공 등 기존 하천시설물에 대한 능력검토 결과를 제시</p> <p>-권역 내 신설 교량(8개소)과 보·낙차공(7개소)의 위치 및 제원과 필요성을 제시</p> <p>-제방 축제 및 보축구간에 대해서는 대표 횡단면도를 제시</p> <p>-검토의견의 반영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계획하천별 시설물 계획과 기타 변경 사항을 요약해서 비교·제시</p> <p>-목표하는 치수안전도 달성을 위한 천변저류지, 홍수관리지역 지정 등 비구조적 홍수방어 대안을 검토</p> <p>-최근 개수가 완료된 계획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확폭 및 축제, 보축 등 금회 개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p> <p>-계획하폭 결정 시(749쪽) 확실적인 하폭확장을 지양하고, 기존 제방 상태, 하천시설물, 토지이용현황, 용지취득 난이도(편입면적 최소화), 지형·지질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수소통에 필요한 적정 하폭을 결정</p> <p>-제방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과 면적이 작고 그 중요도가 높지 않은 경우, 치수경제성 측면에서 제방계획의 필요성을 검토</p> <p>-개수 전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부족고가 미미한 경우, 하폭확장 및 그에 따른 제방축제 보다는 보축하는 방안을 검토</p> <p>-둑마루폭 부족에 따라 보축계획이 수립된 경우, 제방 안전성과 중요도, 제내지의 상황, 둑마루의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보축계획 수립 여부를 판단</p>	<p>-계획홍수량, 계획홍수위(개수 전, 개수 후), 하폭(현재, 계획), 기설제방고(좌·우), 여유고, 부족고 검토결과를 정리하여 제시하였음.</p> <p>-배수시설, 교량, 보·낙차공 등 기존 하천시설물에 대한 능력검토 결과를 제시하였음</p> <p>-권역 내 신설 교량(8개소)과 보·낙차공(7개소)에서 교량 1개소, 보 및 낙차공 1개소로 축소하였음.</p> <p>-제방 축제 및 보축구간에 대해서는 대표 횡단면도를 제시하였음.</p> <p>-계획하천별 시설물 계획과 기타 변경 사항을 요약해서 비교·제시하였음.</p> <p>-목표하는 치수안전도 달성을 위해 홍수관리지역을 7곳을 지정하여 비구조적 홍수방어 대안을 검토하였음.</p> <p>-최근 개수가 완료된 계획하천 구간에 대해서는 확폭 및 축제, 보축 등 금회 개수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p> <p>-계획하폭 결정 시 확실적인 하폭확장을 지양하고, 기존 제방 상태, 하천시설물, 토지이용현황, 용지취득 난이도, 지형·지질 등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홍수소통에 필요한 적정 하폭을 결정하였음</p> <p>-제방으로 인해 보호되는 시설과 면적이 작고 그 중요도가 높지 않은 경우, 치수경제성 측면에서 제방계획의 필요성을 검토하였음.</p> <p>-개수 전 홍수위에 대한 제방 여유고의 부족고가 미미한 경우, 하폭확장 및 그에 따른 제방축제 보다는 보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p> <p>-둑마루폭 부족에 따라 보축계획이 수립된 경우, 제방 안전성과 중요도, 제내지의 상황, 둑마루의 이용성 등을 고려하여 보축계획 수립하였음</p>	반영



구 분	협의를견	조치계획	비고
영산강유역환경청	-교량 능력 검토 시 교량연장이 충분한 경우 경간장과 여유고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수 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	-교량 능력 검토 시 교량연장이 충분한 경우 경간장과 여유고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우수소통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거나 최근 신설된 교량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반영
	○산지하천 또는 전원하천의 특성을 갖는 하천(평가서 31~59쪽)의 경우, 필요시 치수기능을 보강하되 자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하도정비 및 개수계획을 지양 -이중 우수한 산림역과 연계 또는 인접한 하천 구간은 수변경관 및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	○산지하천 또는 전원하천의 특성을 갖는 하천의 경우, 필요시 치수기능을 보강하되 자연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과도한 하도정비 및 개수계획을 지양하였음 -이중 우수한 산림역과 연계 또는 인접한 하천 구간은 수변경관 및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자연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보전지구로 지정하는 방안 검토하였음	반영
2) 생활환경의 안정성 가) 환경기준의 부합성	○재가설, 신설, 철거, 또는 이설이 계획된 교량(246개소), 보/낙차공(274개소)에 대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성상·종류별로 산정하고, 하동군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참고하여, 본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매립, 소각, 재활용 가능량(률)을 정량적으로 계획·반영하여야 함 ※ 「화순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 1300~1303쪽 참고	○재가설, 신설, 철거, 또는 이설이 계획된 교량, 보/낙차공에 대하여 폐기물 발생량을 성상·종류별로 실시계획시 산정하여, 본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매립, 소각, 재활용 가능량(률)을 계획에 반영할 것임	반영
	○하천저질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해당 하천의 퇴적물 오염도 현황을 제시하여야 함	○하천저질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해당 하천의 퇴적물 오염도 현황을 제시하였음	반영
	○본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다량의 혼합폐기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혼합폐기물 저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반영하여야 함	○혼합폐기물 저감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반영하였음.	반영
3)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하천공간관리계획의 원칙과 보전·복원·친수지구의 지정 기준 및 관리방향만을 제시하였을 뿐 각 지구의 구체적인 구간과 토지이용현황 등을 지도를 통해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하천공간관리계획의 원칙과 보전·복원·친수지구의 지정 기준 및 관리방향만을 제시하였고 각 지구의 구체적인 구간과 토지이용현황 등을 지도를 통해 명시하였음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영산강유역환경청	<p>-본 하천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지구지정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도면 포함)하고 친수지구 설정시 아래의 사항을 검토</p> <p>-천변 자연경관 및 하천생태 현황이 양호한 구간을 친수지구 설정하는 것은 지양</p> <p>-친수지구의 설정은 가급적 동일 구간의 하천 양안에 모두 계획하기보다는 한쪽 편에 제한하는 것이 필요</p> <p>-친수지구 구간에 대하여는 해당 구간 및 배후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하천변 개발계획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과 도면을 제시하고 친수지구 설정의 적정성을 평가</p>	<p>-지구지정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유, 필요성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도면 포함)하고 친수지구 설정시 아래의 사항을 검토하였음.</p> <p>-천변 자연경관 및 하천생태 현황이 양호한 구간을 친수지구 설정하는 것은 지양하였음</p> <p>-친수지구의 설정은 가급적 동일 구간의 하천 양안에 모두 계획하기보다는 한쪽 편에 제한하였음</p> <p>-친수지구 구간에 대하여는 해당 구간 및 배후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및 하천변 개발계획 등을 식별할 수 있는 도면을 제시하였고, 친수지구 설정의 적정성을 평가하였음.</p>	반영
	<p>○계획대상 구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국립공원,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국립공원, 산림유전자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과 연계된 구간은 보전지구로 설정하여 하천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거나 최소화하여야 함</p>	<p>○계획대상 구역 중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국립공원,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국립공원, 산림유전자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등과 연계된 구간은 보전지구로 설정하여 하천 시설물의 설치를 지양하거나 최소화하였음.</p>	반영
	<p>○계획 하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다년간의 생활 경험을 통해서 과거 수해이력, 생태계 특성, 하천 개발과 이로 인한 영향 등 통계로 나타나지 않은 고유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바,</p> <p>-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간단한 서면조사 혹은 면담을 통해 수해 내역, 생태계, 하천 개발 내역 등을 조사하고 이것을 황룡강권역 28개 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p>	<p>-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 및 간담회를 통해 수해 내역, 생태계, 하천 개발 내역 등을 조사하고 이것을 황룡강권역 28개 하천정비 종합계획에 반영하였음</p>	반영
	<p>III. 기타사항</p> <p>○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에 제시한 세부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제시하여야 함</p>	<p>○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조치하고, 「환경영향평가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별표]에 제시한 세부평가항목에 적합하게 작성하여 제시하였음</p>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영산강유역환경청	<p>○평가서상의 환경현황 조사내용, 환경영향 예측 결과 및 저감대책 등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며, 최대한 정량화하여야 함</p> <p>-특히,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p> <p>※환경영향평가서 작성용역에 대하여 도급을 받거나 도급받은 용역의 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의 공정한 거래정착을 위한 운영지침(안)(2013.1.1. 시행)」에 따라 원도급률, 하도급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환경영향평가서 부록에 첨부</p> <p>-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 제시</p>	<p>○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최대한 정량화하였음</p> <p>-특히, 현황조사 및 조사결과는 조사자 인적사항 및 조사자 의견을 첨부 제시하고 장래 환경영향 예측(예측조건, 예측적용 방법, 예측 시 사용계획, 수치 등)은 그 적용 및 산정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였음</p> <p>-관계법령 및 관련 행정계획과 연관되는 내용은 그 근거를 기술하고, 그 내용의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본 등의 근거자료 제시하였음</p>	반영
	<p>○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여야 함</p> <p>-본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한 그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 끝.</p>	<p>○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본 의견과 관계행정기관 및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를 종합하여 그 내용 및 반영여부를 요약 제시(각 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구분)하고, 반영된 의견은 해당 항목에 작성·제시하였음</p> <p>-본 의견보다 강화된 보전대책을 강구하거나 반영되지 아니한 의견에 대한 그 사유와 함께 대안을 제시하였음.</p>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장성군	<p>○본 사업은 황룡강권역(장성군 지역-지방 하천)에서의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 관리 목적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써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p>	<p>○본 사업은 황룡강권역(장성군 지역-지방 하천)에서의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 관리 목적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써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사항을 준수할 것임</p>	반영
	<p>○본 계획하천에서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관변화는 미비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가급적 원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변영향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자연친화적 하천계획이 수립 시행되어야 함</p>	<p>○본 계획하천에서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관변화는 미비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가급적 원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변영향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자연친화적 하천계획이 수립하였음</p>	반영
	<p>○하천변에서 시행되는 공사 특성상 토사 유출로 인한 하천의 영향이 예상되므로, 토사유출 예방에 따른 사면붕괴 방지 등 수질오염저감대책(물막이 형태 침사지, 오타방지막, 가배수로 설치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오타방지막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성능저하로 인한 부유토사의 확산을 예방하여야 함</p>	<p>○하천변에서 시행되는 공사 특성상 토사 유출로 인한 하천의 영향이 예상되므로, 토사유출 예방에 따른 사면붕괴 방지 등 수질오염저감대책(물막이 형태 침사지, 오타방지막, 가배수로 설치 등)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오타방지막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성능저하로 인한 부유토사의 확산을 예방할 것임</p>	반영
	<p>○계획하천 공사시 토공작업 및 공사장비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주기적인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출입구 주변 등을 상시 관리하여야 함</p>	<p>○계획하천 공사시 토공작업 및 공사장비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주기적인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출입구 주변 등을 상시 관리할 것임</p>	반영
	<p>○본 사업은 영산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대상지역(황룡A, 영본B 단위유역)에 해당되므로, 사업시행 전·후 최종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총량부서와 협의하여야 함</p>	<p>○본 사업은 영산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대상지역(황룡A, 영본B 단위유역)에 해당되므로, 사업시행 전·후 최종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총량부서와 협의하였음</p>	반영
	<p>○공사 시 및 사업시행 후 당초 예측하지 못한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2차적 환경피해를 예방하여야 함</p>	<p>○공사 시 및 사업시행 후 당초 예측하지 못한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2차적 환경피해를 예방할 것임</p>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p><input type="checkbox"/> 총 괄</p> <p>○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제시된 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아래의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주변 환경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중 예측치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 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신속히 강구시행하여야 함</p> <p>-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p>	<p>○환경영향 저감방안과 아래의 협의의견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주변 환경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하고 공사중 예측치 못한 환경영향이 발생 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신속히 강구하여 시행할 것임</p> <p>-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당사자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그 대책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할 것임</p>	반영
	<p><input type="checkbox"/> 항목별 협의의견</p> <p>가. 대 기</p> <p>○공사시 날리는 먼지(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별표14〕“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및〔별표15〕“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p> <p>-살수차 수시 운행, 차량 덮개 사용</p> <p>-가설방음판넬 및 가설방진망 설치 등</p>	<p>○공사시 날리는 먼지(비산먼지) 방지를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8조 제4항〔별표14〕“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및〔별표15〕“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준수할 것임</p> <p>-살수차 수시 운행, 차량 덮개 사용</p> <p>-가설방음판넬 및 가설방진망 설치 등</p>	반영
	<p>○공사 시 투입되는 장비(덤프트럭, 굴삭기 등)로 인해 도로 주변 등 외부로 비산먼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함</p>	<p>○공사 시 투입되는 장비로 인해 도로 주변 등 외부로 비산먼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륜세차시설, 살수차운행등 저감방안을 수립하였음</p>	반영
	<p>나. 악취, 소음진동</p> <p>○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작업 지양 및 “건설공시장의 소음관리요령(환경부)”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함.</p>	<p>○공사시 소음진동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야간작업 지양 및 “건설공시장의 소음관리요령(환경부)” 등을 준수하여 사업을 시행할 것임</p>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다. 수 질 ○공사 및 운영시 부지내에서 발생된 비점 오염물질이 초기 우수로 인하여 인근 수계에 직유입되지 않도록 적정 저감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공사 및 운영시 부지내에서 발생된 비점오염물질이 초기 우수로 인하여 인근 수계에 직유입되지 않도록 적정 저감대책을 실시설계시 수립할 것임	반영
	○공사시 토사유출에 따라 주변 농경지 등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적정 규모의 가배수로 및 침사지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공사시 토사유출에 따라 주변 농경지 등에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기를 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적정 규모의 가배수로 및 침사지 등을 설치·운영하는 등 토사유출 방지대책을 수립하였음	반영
	라. 빛공해 ○해당구역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조명기구 설치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주변 식생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주변 민가에 조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함.	○해당구역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조명기구 설치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 주변 식생의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하고 주변 민가에 조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할 것임.	반영

구 분	협의의견	조치계획	비고
담양군	○본 사업은 황룡강권역(담양군 지역-지방 하천)에서의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 관리 목적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써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본 사업은 황룡강권역(담양군 지역-지방 하천)에서의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 및 체계적 관리 목적의 하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써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고 그 협의사항을 준수할 것임	반영
	○본 계획하천에서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관변화는 미비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가급적 원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변영향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자연친화적 하천계획이 수립 시행되어야 함	○본 계획하천에서의 사업으로 발생하는 경관변화는 미비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가급적 원지형을 최대한 보존하고 주변영향 및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자연친화적 하천계획이 수립하였음	반영
	○하천변에서 시행되는 공사 특성상 토사 유출로 인한 하천의 영향이 예상되므로, 토사유출 예방에 따른 사면붕괴 방지 등 수질오염저감 대책(물막이 형태 침사지, 오탁방지막, 가배수로 설치 등)을 수립시행 하여야 함. 오탁방지막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성능저하로 인한 부유토사의 확산을 예방하여야 함	○하천변에서 시행되는 공사 특성상 토사 유출로 인한 하천의 영향이 예상되므로, 토사유출 예방에 따른 사면붕괴 방지 등 수질오염저감 대책(물막이 형태 침사지, 오탁방지막, 가배수로 설치 등)을 수립시행하고 오탁방지막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성능저하로 인한 부유토사의 확산을 예방할 것임	반영
	○계획하천 공사시 토공작업 및 공사장비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주기적인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출입구 주변 등을 상시 관리 하여야 함	○계획하천 공사시 토공작업 및 공사장비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하여 주기적인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출입구 주변 등을 상시 관리 할 것임	반영
	○본 사업은 영산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대상지역(황룡A단위유역)에 해당되므로, 사업시행 전·후 최종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총량부서와 협의하여야 함	○본 사업은 영산강수계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대상지역(황룡A단위유역)에 해당되므로, 사업시행 전·후 최종배출부하량을 산정하여 총량부서와 협의하였음	반영
	○공사 시 및 사업시행 후 당초 예측하지 못한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 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2차적 환경피해를 예방하여야 함	○공사 시 및 사업시행 후 당초 예측하지 못한 환경적인 피해가 발생 될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2차적 환경피해를 예방할 것임	반영